

【별지 제20호 서식】 <신설 2018.4.18., 개정 2019.10.31.>

상담기록관리부

(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)

상담일시	2020. 10. 15.	상담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방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상 담 요청자	성명	이	생년월일
	소속/직위(직급)		연락처

상담 내용

외부강의 신고 시 시기, 방법 등 문의

상담 결과

-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'임직원행동강령' 내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 후 윤리경영팀으로 제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

제 22 조 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020년 10월 15일

행동강령책임관

강 무 경

